

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------	-----	----------

납세자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(영업소)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

대리인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(영업소)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

청구 내역	① 통지기관				
	② 통지받은 연월일				
	③ 통지내용	세목		그 밖의 내용	
		세액			
	④ 청구세액	통지된 세액		청구대상 세액	
⑤ 청구내용 및 이유(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)					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,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,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.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(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

위임자(납세자)

(서명 또는 인)

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

(접수번호 호)

성명(법인명)	주소(영업소)
접수자	접수일자
1.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8조 및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 ※ 열람가능 자료: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자료 중 청구인의 주장, 처분청의 의견,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 ※ 의견진술 신청서: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0호서식	
2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

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

1. 개요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변호사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,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신청자격

- 가. 2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자가 대리인이 없을 것
- 나.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,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
- 다. 고액·상습 체납자 등(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)이 아닐 것
- 라.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

3. 신청절차

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청구내역

- ① 통지기관: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.
- ② 통지받은 연월일: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③ 통지내용: 과세가 예고된 세목과 세액 등을 적습니다.
- ④ 청구세액: 과세가 예고된 세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는 세액을 적습니다.
- ⑤ 청구내용 및 이유: 통지 등의 결과에 대한 취소, 경정 등과 그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을 적습니다.

2. 제출기관

- ① 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[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·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·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,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]의 경우 시·도지사
- ② 특별자치시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
- ③ 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
- ④ 시·군·구세[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·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·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,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]의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

처리절차

